

# 인천광역시서구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<http://www.seo.incheon.kr/>

선 기관의장

람

제1684호 2022. 7. 20.(수)

차 례

## 공 고

-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133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 
조례안 입법예고 1

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22-1332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」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2. 7. 20.

인천광역시 서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‘부구청장’ 에서 ‘국장’ 으로 변경(안 제11조 일부개정)

### 3. 의견제출

가.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(참조: 도로과, 전화 032)560-4484, 팩스 560-2764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팩스 및 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바람)

※ 우편 발송 의견 제출처

[주 소] (우22726)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(심곡동)

인천광역시 서구청 도로과 건설행정팀

나.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다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
4. 참고사항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1. 제안이유

- 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국장으로 변경하여 신속한 업무 수행 및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서구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‘부구청장’에서 ‘국장’으로 변경(안 제11조 일부개정)

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합 의: 기획예산담당관, 감사담당관, 가정보육과 합의 예정

라. 기 타 : 해당없음

인천광역시 서구조례 제 호

##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서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부구청장”을 “건설산업 업무 담당 국장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 |
|---|---|
| <p>제11조(구성 등) (생 략)</p> <p>② 위원장은 <u>부구청장</u>으로 하<br/>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<br/>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<br/>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<br/>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| <p>제11조(구성 등)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건설산업 업무 담당</u><br/><u>국장</u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|

# 의견제출서

| 검 토 구 분      |  | 유    | 무    |
|--------------|--|------|------|
| 검토사항         | 1. 관련법령 위배 여부 등 검토<br>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등 심의<br>3. 조직 및 예산 수반 협의<br>4. 주민의 권리와 이익 침해 여부<br>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 여부<br>6. 기타 문제점 |      |      |
| 실·국(군·구)별 의견 |  |      |      |
| 협의개요         | 실·국별   | 제출의견 | 검토내용 |
|              |  |      |      |

# 의견제출서

1. 자치법규명

2.

성명(단체명/대표자)

주 소

3. 의견

4. 기타

인천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의견 제출인 주소

(전화 : )

성명 (서명 또는 인)

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

비고

1.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
2.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.
3.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.